

의안번호	2206869
의 퇴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5.01.13.
추 계 번호	24C62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0조의11 (통학지원)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2.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5.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6.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의무규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0조의11 (통학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등’에게는 통학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¹⁾, 개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는 통학지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통학거리·통학환경·학교 통폐합 등 각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관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교육청별 통학 지원 사례

	구분	내 용
경기 교육청	통학거리	· (초등학교) 학교와 거주지 기준 통학거리 1.5km 이상 · (중학교) 등·하교 시간 기준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상
	통학환경	· (교통취약) 취약한 교통환경으로 학생 다수가 도보·대중교통 통학이 어렵거나, 등·하교 시간 유동인구 집중으로 통학시간 증가(30분 이상) 및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학교 · (통학안전) 보·차도 미분리, 안전시설물 설치 취약 등 통학안전 개선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학교 · (재난지역) 재난 발생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교지연 등	· (임시배치교)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임시배치교 중 학생 다수가 취약한 통학 환경으로 도보·대중교통 통학이 어려운 경우 (위 통학거리 및 환경 기준 준용) · (통·폐합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에 의해 통·폐합된 학교는 통학거리 및 환경 기준 예외 적용
	기타	·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차량 지원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 교육청 ²⁾	직영버스	· 통폐합지역 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교 직영버스 운영비 지원
	임차버스	· 농어촌 및 벽지지역, 작은학교, 공립유치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임차 통학버스 지원
	임차택시	·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 및 벽지 지역 학생 임차 통학택시 지원
경북	유치원	· 공립유치원 : 원아 수, 운행노선, 운행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단,

1) 제60조의11(통학 지원)

-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교육청		병설유치원은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사립유치원 :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통·폐합 학교 ·농어촌지역(읍·면)의 통학 학생 중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통학로의 실제 이동 거리가 1.5Km 이상인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하여 승차인원 수,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해당 통학구역을 벗어난 운행의 경우 통학 지원 불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폐합 학교 ·농어촌(읍·면)지역 중학생 중 대중교통이 없고, 통학버스 지원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승차인원 수,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특수학교	학생 수 및 통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버스(특장차) 등 지원
	기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지원의 기간과 내용을 정하여 결정한 경우 1) 통학로 등의 보행·교통안전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재난, 재해 등의 특수한 사안이 발생하여 긴급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생 분산배치 추진 등 특수한 상황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료: 각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 거주 학생 중 해당 인원의 통학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유관 사업의 확대 또는 추가 신규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에 대한 추정이 곤란
- 개정안에 따른 대상으로 규정된 학생 중 일부는 각 시·도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미 통학 지원을 받고 있음
 - － 전남·경북·전남·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 중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세종·제주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학교 등에, 대구·울산·경기·경남교육청 등에서는 통·폐합학교 학생 등에 대하여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음³⁾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학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기존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규모, 신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추정에 한계가 있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이외에 특수교육대상자 및 통폐합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 및 통폐합학교 지역 학생 하숙비 지원사업이 있음(자료: 강원교육청)

3)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참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